

제 977 호
1983. 7.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김 선 배
공 보 관 김 영 근
전 화 : 725-7694
인 쇄 : 서울특별시 통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032 호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의판운영규칙중개정규칙 4

○ 고 시
제 38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
제 387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변경허가 (제 2 차) 9
제 38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차입기간연기) 9
제 38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 10
제 39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변경결정 10
제 391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및변경결정 12

< 이 면 제 속 >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371

제 392 호 :	1983년도제 2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고시	12
제 393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13
제 394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변경	13
제 39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효, 결정의 변경결정	14
제 39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및변경결정	14
제 397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고시	16
제 398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16
제 399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17
제 40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7
제 40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
제 402 호 :	한강종합개발사업골재운반선박운항허가사항변경허가고시	20
제 40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0
제 40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1
제 405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	21
제 406 호 :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및사업시행자치정변경고시	22
제 407 호 :	울지로 2가구역제 16, 1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자치정변경고시	23

◎ 공 고

제 406 호 :	케이, 에스표시정지처분공고	24
제 408 호 :	무교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24
제 41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5
제 413 호 :	루기과열지구지정	26
제 417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	26
제 41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7
제 421 호 :	서린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29
제 422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분임징수판 : 공인등록공고	30
제 424 호 :	서울특별시관내도시설계구역지정공고	31
제 425 호 :	도시계획사업 (접속도로) 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31
제 42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완료	33
제 430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33
제 431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34
제 43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	34

제 433 호 : 환기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36
◎ 구 청 공 고	
제 431 호 : 공인계각공고	36
제 44 호 : 판인계교부공고	36
◎ 예 규	
제 441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운영규정	37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규칙 제 2032 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시장”을 “서울특
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 12 조 제 2 항중 별지 제 3 호 서식
을 별표 1 과 같이 하며 제 3 호
다음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별지 제 8 호 서식을 별표
2 와 같이 한다.

4. 입주자 보증각서 1 부 (별지 제 8
호 서식)

제 13 조 제 3 항중 별지 제 5 호 서식
을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 14 조 제 2 항중 “와 소속사업장
대표의 보증각서 1 부 (별지 제 8
호 서식) ”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입주자 보증각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 3 호 서식)

입 주 신 청 서

1. 주택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임대 아파트

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적		주민등록지	
원거주지			
거주상태	자가, 친숙, 세방 (전세, 월세) 하숙	동숙여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근 무 처	회사명		
가족관계	부모 (생존시만 0 표시) 남 . 여 . 중 . 여	본인월동금액	원

3. 약정사항

가.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치 않고 잔약을 체결하지 못할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가. 추천서 1부

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원호대상자 또는 모범근로자증명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입주자 보증자서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귀하

별표# 2 (제 8 호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입 주 자 보 증 각 서</p> 입주자 인적 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직 명	
위 사람이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 회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회 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위 사람의 퇴직금 및 급여의 범위내에서 변상토복하며 이에 신원을 보증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증인 사업증명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성 명 ㉠</p>			
본인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동 회 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 및 급여중에서 우선변상할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보증인인 사업장대표에게 위임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입주자 성 명 ㉡</p> <p style="margin-top: 20px;">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귀하</p>			

별표# 3 (제 5 호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입 주 결 정 통 보 지 서</p>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 무 처	회 사	근 무 부 서	
입주동호수	동	호	방
계약체결일	198	년 월 일	- 월 일
<p>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내에 계약체결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만일 지정 기일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계 약 시 준 비 사 항)</p> <p>1. 임대보증금 납부증명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사 귀 하</p>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8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7.25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강남구서초동산 120-4 영동개발진흥(주) 대표 광근배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가. 위치 : 강동구방이동 400-2 호 외 315 필지.
나. 면적 : 62,327.5532 ㎡
다. 규모 : 아파트 12 층 14 동 936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83.7 ~ 84.11

◎서울특별시고시제 387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변경허가 (제 2 차)**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4 (81.7.4)

호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 허가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556 (82.12.30) 호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변경 (제 1 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지의 8 필지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 변경허가 (제 2 차)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지의 8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경동시장)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토 지 (면적)
시장 - 5,059 ㎡
도로 - 901.16 ㎡
 - 건물 (면적) : 판매장 및 관리실 1 동 - 15,139.68 ㎡

(규모) : 층수 - 지 2층 :
 3,898.10㎡ 지 1층 : 3,955.90㎡
 지상 1층 - 3층 : 2,354.40㎡
 옥탑 : 222.4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36번지

○ 성명 : 경동시장(주)
 대표이사 이 범 상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년월일 : 81.9.5

○ 준공예정일

1) 1차변경 : 83.6.10

2) 2차변경 : 84.5.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동사항 없음.

사. 도시계획법 제 83조 규정에 의거 준공후 귀속 및 양도될 재산의 명세서 : 변동사항 없음.

나. 변경허가 설계도서 (변동사항 없음)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0 (83.6.16)

호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성동구 화양동 119-5 호 -111-124 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6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화양동 119-5 호 -111-124 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포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노폭 8m 연장 300m
 아스팔트포장 20.4a
 하수도공사 (용관φ=600mm L=300m)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성동구 자양동 220-147

성동구청장 이 된 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착수 - 83.6

준공 - 83.7.20

변경 착수 - 변경없음

준공 - 8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아. 기타 문의 사항은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9705) 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8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

경허가 (사업기간연기)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6 호 (80.7.23)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10 호 (83.1.10)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허가된 성동구 광장동 553-1 번지의 2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3 차 변경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6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성동구광장동 553-1 호외 2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

업 (학교)

사회복지법인 구령회 다니엘학교 증축

다. 사업시행자주소및 성명
서울시성동구광장동 553

이 총 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6,790 ㎡ (2,054 평)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가. 사업의 착수일 : 80.7.23

나. 준공 예정일 : 81.8.15

○ 1 차 변경후

가. 사업의 착수일 : 변경없음

나. 준공예정일 : 82.12.31

○ 2 차 변경후

가. 사업의 착수일 : 변경없음

나. 준공예정일 : 83.6.30

○ 3 차 변경후

가. 사업의 착수일 : 변경없음

나. 준공예정일 : 83.9.30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9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

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
 법시령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항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6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별첨)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성략)

○ 시설조서

번호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고
1	신 설	소 로	3	6. m	130 m	농천 196 일대	농천동 196 일대	
"	"	"	"	"	34	" 1633 "	"	
"	"	"	"	4-12	122	신림동 640 "	신림동 639 "	
"	"	"	"	4	35	" 178 "	" 708 "	
"	"	"	"	5-6	18	" 1635 "	" 1635 "	
2	"	"	1	10	74	공향동 4-124 일대	공향동 4-152 일대	
3	"	"	3	4	36	화곡동 338-16 "	화곡동 338-23 "	
4	기 정	"	"	6	136	방화동 168-18 "	방화동 187-1 "	
	변 경	"	2	8	"	"	"	국원확장
5	신 설	"	"	"	60	행당동 318-18 "	행당동 318-19 "	
6	"	"	3	6	70	신당동 304-626 "	신당동 387-44 "	
7	"	"	"	"	14	청량리 206-17 "	청량리 206-17 "	
8	"	"	"	4	24	저기동 122-367 "	청량리 205-768 "	
9	기 정	"	"	"	130	창신 108-2 "	창신동 83 일대	
	변 경	"	"	6	"	"	"	국원확장
10	신 설	"	2	8-12	270	홍은 9-339 "	홍은 9-276 "	

◎ 서울특별시고시제 391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26.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남구일원동 9 일대	23,140	
기정	"	강서구목동 404-3 "	2,807	
변경	"	"	감 "	폐 지
신설	"	강서구신정동 737-6 "	8,786	위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92 호

1983 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3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7. 26.
서울특별시장

회 계 명	예 산 액	단 위 : 천원
○ 일 반 회 계	839,886,758	

◎서울특별시고시제 393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0 호 (83. 7.20)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27.

서울특별시청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도매시장	신영사려가	영등포구신길동 255-8 외 2필지	2,843㎡	시설 (시장) 결정 시 주변 차도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글.

◎서울특별시고시제 394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구역일부 변경및설계변경허가

1. 서울시 고시 제 101 호 (79.3.2) 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 허가된 마포구 성산동 350 번지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구역 일부 변경 및 설계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7. 28.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시행지 : 마포구 성산동 350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다. 사업 시행 규모

(1) 부지면적

(가) 당초 : 56,346㎡

(나) 변경 : 55,914㎡

(2) 석축

(가) 당초 : 1,921㎡

(나) 변경 : 673.8㎡

(3) 하수도

(가) 당초 : 300-1,000mm L=1,759

(나) 변경 : D-700mm L=600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소: 강남구 서초동 84-4 호 세범빌딩 501 호 (2) 성명: 한국자동차징비사업 진흥 회장 이윤화</p> <p>마. 사업시행기간: 1979.3.2 - 1983. 12.31.</p> <p>바. 위치도, 평면계획도 공사설계 도 서: 별첨: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395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고시</p> <p>○ 도로 실효 조서</p>	<p>1. 당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1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 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7. 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고시 내용
실효	대로	3	110	25	3,000	광로 5 호	암사동강변	미지적 승인 구간 실효 (연장 57)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p> <p>◎서울특별시고시제 396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p> <p>결정및변경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시설 (도로,</p>	<p>광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 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p>
--	---

계획국 시설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3. 7. 26.
 서울특별시장

○ 결정 및 변경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결의 내역	결정 내용
결정	대도	3	110	25	3,000	광로 5호	암사동 강변	실 구 57 결 간 간	효 간 57 간

나. 광장 변경 결정

구분	번호	광장명	위치	고시내 면적 (㎡)	비고
기정	24	농산역앞광장	한강로 3가 40-1	23,374	면적 786 ㎡ 감소
변경	"	"	"	22,588	
기정	35	청량리동부역	전능동 127-10	8,200	제지
변경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397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77호 (80.5.27)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219 호 (80.6.16) 로 지적승인된 당구 관내상계동 389-752 번지의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장) 상계 중앙시장의 증축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29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상계동 389-752 외 1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상계중앙시장 증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 4,662 m²
 - 2) 건축면적 : 지 총 681.5 m²
1 층 493.0 m²
2 층 660.5 m²
계 1,835.0 m²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도봉구상계동 389-234

성명 : 대표이사 김길환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1) 착공예정일 : 사업시행허가후 1개월 이내
- 2) 준공예정일 : 84.7.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98호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고시

-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수도)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29

서울특별시

<u>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조서</u>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수 도	은평구진관외동 479-1, 2 외 2 필지	1,553	백수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상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399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고시</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p>		<p>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7.24 서울특별시 관</p>		
<u>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조서</u>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공용의청사	동대문구계기동 287-31	330	제 1 동천사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상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40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p>		<p>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316-1, 17, 21, 28, 29, 30, 294-1, 6 등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p>		

<p>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3.7. 3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p> <p>2. 사업주체 : 성동구치소 주택조합조합장 민승일</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p>	<p>가. 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 316-7, 17, 21, 28, 29, 30 294-5, 6(8.필지)</p> <p>나. 면적 : 대지 5,722㎡ 건축면적 : 1,144.11㎡ (6,481,382㎡)</p> <p>다. 규모 : 아파트 5층 3동 99세대</p> <p>4. 사업시행기간 : 1983.7-1983.8.14</p> <p>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조서</p>
---	--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m)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유		6m	56m	길동 316-30		길동 313-2			
변경	소로	2유		8m	56m	"		"			

(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40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8. 2

서울특별시

-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강남구신사동 603-2 한국도시개발(주) 최수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동구둔촌동 30외 25필지
나. 면적 : 27,616.0㎡
다. 규모 :

아파트 14층 2동 }
13층 1동 } - 498세대
11층 2동 }

상가 3층 1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3.8-84.8.31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가.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2	1	8	188	길동산 64-14	문촌동 34	
신설	"	3	1	6	125	문촌동 29-3	문촌동산 9-3	
폐지	소로	3	2	6	158	" 5-5	" 29-3	
"	"	3	3	6	114	" 29-2	" 28	
"	"	3	4	6	150	" 32	" 24-1	
"	"	3	5	6	190	" 34	" 9-3	
기정	"	3	6	6	117	길 동 16-17	" 9-3	
변경	"	3	6	6	83	" 316-17	길동산 60-4	연장 400
신설	"	2	2	8	34	길동산 60-4	" 60-4	
기정	"	3		6	62	" 298-17	문촌동산 9-3	
변경	"	2	3	8	62	" 298-17	" "	폭원확장
폐지	"	3	7	6	38	문촌동 35-2	" 34	서울특별시도시 계획법 제 21 조 56 기조서
"	"	3	8	6	53	" 34	" 84-4	(경운주차 4524 ~ 31705(83.7.29)
변경	"	2	4	8	38	" 35-2	" 34	폭원확장
"	"	2	5	8	53	" 34	" 84-4	

<p>◎서울특별시고시제 402 호</p> <p>골재운반을위한선박의운항허가 사항변경허가고시</p> <p>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채취된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운항을</p>		<p>허가한 바, 대수의 변경승인요청이 허가한 바 있으나 선박운항허가 대수의 변경승인요청이 있어 변경허가 하고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3.8. 2</p> <p>서울특별시장</p>		
<p>○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허가 변경내용</p>				
공구	점용수허가자	점 용 위 치	점 용 허 가 사 항 내 역	
			당초변경전	변경승인후
7	미룡건설(주) 김준기	서울성동구성수동 1 가 685-31 앞한강 (제 7 공구 한강구역내)	예인선 - 12 대 바지선 - 24 대	예인선 - 6 대 바지선 - 8 대
<p>○ 점용허가기간 : 1983 년 8 월 2 일 - 1984 년 2 월 29 일</p> <p>* 허가내용 및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p>				
<p>◎서울특별시고시제 403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주요변경 승인내역</p>		<p>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3.8. 3</p> <p>서울특별시장</p>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중구인현동 2 가 141 의 1 경남기업(주) 대표 신기수		좌 동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치	강남구개포동 646-1 외 81 필지	강남구개포동 464-1 외 138 필지
면적	32,806.61㎡	55,404.5㎡
규모	아파트 12층 6동 408세대 상가 2층 1동 및 부대부리시설	아파트 12층 6동, 15층 3동 678세대 상가 2층 2동 및 부대부리시설
사업시행기간	'82.9 ~ '84.3.31	'82.9 ~ '84.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0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영등포구여의도동 1-535 동익건설 대표 박삼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서대문구홍은동산 11-217호 외 2 필지
나. 면적: 17,882㎡
다. 규모: 아파트 12층 4동 300세대
상가 2층 1동 및 부대부리시설
4. 사업기간: '83.8-'84.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05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 호(78.2.16)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9 호(82.8.20)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봉납동 388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

1983. 8. 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봉납동 388 번지 외 4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이사재단 서울중앙병원 신축 다. 사업규모 [대지면적 : 179,043 - 건축면적 : 17,285 - 건축연면적 : 81,666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신문로 2가1번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이사장 정 주 영 마. 시행기간 : 1983.8.4-1987.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 미.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아. 시행허가 설계도서 : 생략 다 가. 울지로 2가구역 제 16,17 지구 ○지구통합 및 건축계획 변경결정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406 호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조서 1. 서울도시재개발사업 울지로2가구역 제16 17지구, 무교구역제 14 지구의 사업 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 발법 제 5 조 동법시행령 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4 서울특별시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구	16지구	17지구	16,17 지구	지구통합
대지면적	15,096 m ²	6,920 m ²	22,016 m ²	
건축면적	-	-	-	
건폐율	40%이하	40%이하	40%이하	
연면적	-	-	-	
용적율	700%이하	790%이하	800%이하	
층수	102 m	95 m	1동 - 35/4, 2동 - 27/4, 3동 - 22/4	
배열	별첨	별첨	별첨	
주용도	사무실	사무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신 설	중교장교동 48-3 번지일대		1,354㎡
	" 울지로 2 가 70-3 "		56㎡
나. 무교구역 제 14 지구			
○ 건축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 지 면 적	6,728.9㎡	좌 동	중 61.8%
건축면적	2,181.96㎡	-	
건폐율	32.5%	32.5%이하	
연면적	54,487.62㎡	-	
용적율	538.2%	600%이하	
층수	18/4	22/4 (옥탑2개층포함)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좌 동	
<p>◎ 서울특별시고시제 407 호</p> <p>울지로 2가구역제 16,17 지구재개발 사업시행자지정변경고시</p> <p>서울도시개발 울지로 2가구역 제 16 및 17 지구를 제 16,17 지구로</p> <p>1983. 8. 4 서울특별시장</p> <p>다 음</p> <p>○ 울지로 2가구역 제 16,17 지구 사업시행자 지정변경</p>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 구	16 지구	17 지구	16,17지구(지구통합)
1. 재개발사업의 명칭	울지로 2가제 16지구 재개발사업	울지로 2가제 17지구 재개발사업	울지로 2가 제 16,17지구 재개발사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 구	16 지 구	17 지 구	16, 17 지구 (지구통합)
2. 시행구역	울지로 2가 32, 36 의 1 장교동 32의 1-72의 4 수하동 1의 1-15의 1	울지로 2가 41의 1 - 74의 3	울지로 2가 32, 36 의 1 41의 1-74의 3 동 장교동 32의 1-72의 4 동 수하동 1의 1-15의 1 동
3. 시행면적	18,545 m ²	8,500 m ²	27,959 m ²
4. 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좌 동	대한주택공사
5. 시행자의 사무소소재지	강남구논현동 254번지	"	강남구논현동 254번지
6.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06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3. 7.26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 제 1719 호

허가일자 : 1978.12.29

업체명 : 한성공업 (주)

대표자 : 김 검 용

소재지 : 강서구내발산동 2-6

품 명 : 강 화 유 리

규격번호 : K.S 2002

종류등급 : 평면강화유리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 K.S 규격미달

◎ 서울특별시공고제 408 호

무교구역 제 2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46 호 (76.4.7) 로 사업계획 설정되었으며 동고시 제 46 호 (80.2.12) 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무교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 242

호 (83.4.29) 로 재개발사업 제 3개
 발지정을 받은 현대건설(주)대표이사
 이명박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
 청이 있어 도시재개발사업법 제 33
 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관제서
 류를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일
 반인에게 보인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본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3. 7.27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무교구역
 제 2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종로구무교동 77일대
 (26 필지)

3) 시행면적 : 2,063.5 ㎡

4) 시행자 : 종로구세종로 178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명박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 603-2

6)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1년
 6개월간

7) 건축개요

대지면적 : 1,668.5 ㎡
 건폐율 : 45%이하
 용적율 : 650%이하
 층 수 : 지상 15층, 지하 4층
 주 용 도 : 업무시설

8) 공람기간 : 83.7.27-83.8.26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20-2804)

◎서울특별시공고제 4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적적승인한 다
 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
 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람 공고합니다.

1983. 7.27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사업개요							
사 업 시 행 지	사업종류및 사업명칭	규 모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결 정 고 시 일 자	지 적 고 시 일	비 고
도봉구공릉 동 320-1 의 8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시행 공릉동 320- 350지간도로개 설공사	B=8m L=450 m	83.8	83.12. 31.	74.5.11 제 60 호	74.5.11	일부구간 개설

<p>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장</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조 서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p> <p>라.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p> <p>마. 위치 및 계획평면도 별첨 (도면 생략)</p> <p>바. 토지 (건물) 조서 및 도면은 도 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 치한다.</p> <p>○ 서울특별시공고제 413 호</p> <p>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7. 27. 서울특별시장</p>	<p>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 438 번지의 11 필지</p> <p>2. 면적 : 11,837.254 m²</p> <p>3. 아파트명 : 삼호가든맨션 4 차 (2공구)</p> <p>4. 규모 : 아파트 12 층 1 동, 9 층 1 동 198 세대</p> <p>5. 사업주체 : (주)삼호 대표이사 조 용 시</p> <p>○ 서울특별시공고제 417 호</p> <p>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p> <p>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 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하 였기 동법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7. 27. 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근거법규	영업정지기간
상하수도 (서울 B-50)	(주) 남광공업	김현복	강남구서초동 1118-4	기술자 미보유	건설업법제 38조제 1 항제 1 호	83.7.29 83.10.28

○ 서울특별시공고제 419 호	공 랑 개 요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제 186 호 (62.12.20) 로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종로구창신동 526-1 창신동 433-9 번지간 도로확장 공사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를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틀 공람 공고함.</p> <p>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가. 공람장소: 종로구청토목과 나.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p> <p>1983.7.30.</p> <p>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26-1 창신동 433-9 번지간</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창신동 526-1 창신동 433-9 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규모: 도로확장 폭 = 2 - 4 m → 8 m, 연장 = 135 m</p> <p>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12.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 외 권리명세 (별첨)</p>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관계인 주소 성명		
1	창신동432-2	대	220.8	220.8	종로구당주동 128-23	점세빈외 2인	근저당권설정
2	// 433-13	대	42.1	42.1	성 북구하계 동 253	김 인 입	
3	// 433-12	대	28.6	28.6	도봉구도봉동 149-12 주식회사국민은행	이 옥 영	
4	// 433-11	대	16.4	16.4	성 북구안암 동 2 가 155-29	김 금 옥	근저당권설정
5	// 433-10	대	4.8	4.8	종로구창신동 433-1 주식회사영신상호신용금고	최 태 일	
6	// 459-54	대	13.5	13.5	동대문구전농동 588	윤 중 택	
7	// 459-53	대	1	1	종로구창신동 459-39	정 윤 철	근저당권설정
8	// 458-2	대	257.9	257.9	국 세 청	국	
9	// 459-52	대	4.7	4.7	종로구창신 동 522-3	임 득 수	
10	// 459-51	대	32	32	// 창신동 183-1	분 정 환	근저당권설정
11	// 459-50	대	59.7	59.7	// // 459-9	이 송 원	
12	// 459-49	대	42	42	// // 450-6	황 인 순	
13	// 459-48	대	52.5	52.5	// // 459-8	김 효 용	근저당권설정
14	// 459-47	대	1.8	1.8	// // 459-1	이 제 판	
15	// 524-12	대	61	61	// // 524-10 은평구역촌동 27-33 // 녹번동 56-153	김 화 자 김 정 옥 지 접 순	
16	// 522-4	대	26.4	26.4	종로구창신동 582-3	임 득 수	근저당권설정
17	// 524- 14	대	28.9	28.9	// // 525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임 성 기	
18	// 523- 2	대	39.3	39.3	종로구창신 동 526-1	이 종 만	
19	// 526- 4	대	66.5	66.5	//	//	근저당권설정
20	// 524- 13	대	2.2	2.2	강동구둔촌동 61-6 주식회사국민은행	이 흥 순	

<p>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p>	<p>와 같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 회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 별시 관인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 한다.</p>
<p>1983. 8. 1. 서울특별시장</p>	<p>1983. 8. 1. 서울특별시장</p>
<p>가. 공람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제11 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종로구서린동 56-2일대 (28필지) 3) 시행면적 : 3,015.7㎡ 4) 시행자 : 종로구종로1가1의1 한려개발(주) 대표이사 남 방 회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종로구 종로1가1의1 6)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간 7) 건축개요 대지면적 : 2,579.1㎡ 건 폐 율 : 36%이하 용 적 율 : 700%이하 층 수 : 지상 20층, 지하 4층 주 용 도 : 업무시설 (지하 1층 판 매시설) 8) 공람기간 : 83.8.1 - 83.8.30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20-2704) 	<p>1. 공인명 가. 서울특별시 운수사업 특별회계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 분원분임징수관인 나. 서울특별시 운수사업 특별회계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 분원수입금 출납원인</p> <p>2. 사용개시일 : '83. 8. 1</p> <p>3. 공인의 인영</p>
<p>◎ 서울특별시공고제 422 호</p>	<p>인 영</p> 
<p>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 분원분임징수관공인등록공고</p> <p>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 공인을 아래</p>	<p>공 인 명</p> <p>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 회계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 사업소분원 분임징수관 인</p>  <p>공 인 명</p> <p>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 회계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 사업소분원 수입금출납원 인</p>

◎서울특별시공고제 424 호

서울특별시관내도시설계구역지정공고

1. 건축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변의 도시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을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8. 2.

서울특별시강

가. 도시설계구역

대상가로	연 장	면 적
세종로, 태평로	2.11 km	711,200 m ²
종 로	2.61 km	566,600 m ²
을 지 로	2.78 km	499,500 m ²
계	7.50 km	1,777,300 m ²

나. 도시설계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25 호

도시계획사업 (점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236 호 (78.8.24), 서울시고시 제 315 호 (79.7.12), 서울시고시 제 101 호 (82.3.9) 로 시일 결정 및 지적승인 실시계획인가된 동작대교 건설공사의 점속도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추가로 얻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에게 보인다.
2.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1 부 및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종합건설본부, 용산구청
나. 공람기간: 1983.8.3 - 1983.8.

16 (14 일간)

1983. 8. 3.

서울특별시강

<p style="text-align: center;">- 공 랑 개 요 -</p> <p>1. 사업시행지 : 용산구 이촌동 69의 11 일원에서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앞 일원</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접속도로) 동작대교 건설공사</p> <p>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4. 사업의 규모 : 접속도로 B = 25 m L = 160 m</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4.6.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생략</p> <p>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p> <p>8.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4	용산동 6가	69-170	대	3,200	중구저동 2가 24-1	쌍용양회 공업(주)

◎서울특별시공고제 428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14 호 (83.1.11) 로 시행허가하고 동 고시제227 호 (83.4.18) 및 동 고시제 374 호 (83.7.21) 로 변경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 (시장) 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 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8. 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21-3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21-38
 삼호주택(주) 대표이사 이 중 범
 라. 사업시행기간 : 83.1 - 88.7.27
 마.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644.23㎡
 건축면적 - 817.8 ㎡
 건축연면적 - 3,276.93㎡
 바. 허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제14호 (83. 1.11)
 동고시 제 227 호 (83. 4.18)
 동고시 제 374 호 (83. 7.21)
 사. 준공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30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 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에 의거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3. 8. 3

서울특별시장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제조구분	취 소 사 유
대원로알 전 기 공업사	영등포구양평 동1가218	민동현	1-7-42	전열기구 류 제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의 신고 미이행 동법 제 8 조 제 1 항 5 호의 계속 1 년이상 유지
삼 진 공업사	영등포구양평 동2가 43-6	한제은	1-7-82	전열기구 류 제조	상 동

◎서울특별시공고제 431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 1. 시고시 제 488호(79.10.23)로인
가 고시된 아현1구역과 제이 443.2
-1237(79.11.5)호로 관리처분계획변
경된 연희3구역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
을 일부 변경하여 그 내용을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토지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 2. 동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등기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동 공고로 갈음하고
변경대상 물건지에 대하여는 동계
획변경인가시 까지 사용수익을 제한
하며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주택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3

서울특별시장

- 가. 명칭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 나. 위치 : 마포구 아현동 31, 42, 44
번지일대 (아현1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182번지 주변 (연희
3구역)

◎서울특별시공고제 432 호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
계획변경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1호(75. 4.
21)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
되고 동고시 제 239호(83.4.27)
로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계
획 허가된 강남구서초동 산 58번지
(서초동 590구획) 일대 도매시장
용지 일부에 대하여 사업시행 변
경 허가요청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4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 58번지 (서초동 590 구
획)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
획사업 (도매시장) 시행
-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 강남구 반포동 1176번지
반포아파트 63동 503호 정철신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당 초 (㎡)	변 경 (㎡)	비 고
시 설 면 적	32,680	32,680	
계 획 면 적	32,680	32,680	
금 회 사업 시행 면 적	14,243.36	14,243.36	
건 축 계 획 면 적	16,669.65		
금 회 건 축 면 적	7,853.01	6,223.34	
건 축 계 획 연 면 적	66,418.91		
금 회 건 축 연 면 적	30,892.35	71,363.9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착 공 일	83. 4. 1	83. 8	
준 공 예 정 일	84. 6. 30	85. 5. 30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칭 : 별첨 (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33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당시에서 사업시행중인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일부 변경고자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변경 도서를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인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한다.

1983. 8. 4
 서울특별시

가. 사업당 :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구로구구로동, 신도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 각 일부
 * 변경도서 : 생략

◎ 중구공고제 43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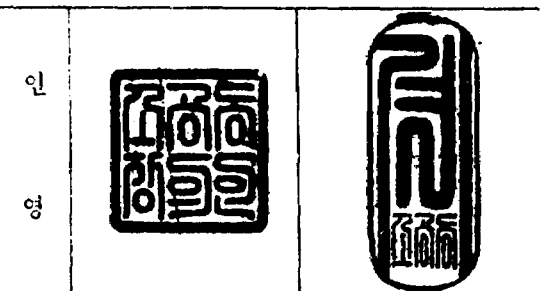
관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공동 및 신당 4 동 동장의 직인 및 계인을 개각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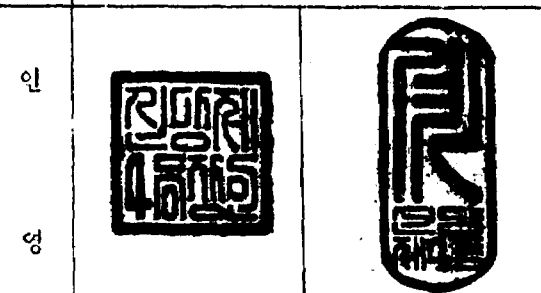
1983.8.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각사용년월일 : 1983.8.1 09:00부터
2. 개각된 직인 : 소공동 및 신당 4 동 동장직인 및 계인
3. 공인개각인영 : 아래모형



공인명 소 공동



공인명 신 당 4 동

◎ 서대문공고제 44 호

관 인 재 교 부 공 고

서대문구 북아현 제 2 동의 1 개소 동장 관인 및 계인을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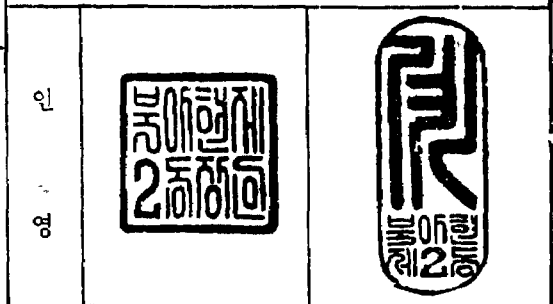
1983.7.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음



1. 관인명
 - 가. 북아현제 2 동장 직인 및 계인
 - 나. 연희 제 2 동장 직인 및 계인
2. 사용개시일 : 1983.8.10 09:00
3. 공인의 인영

= 개 각 공 인 인 명 부 =



직 인 계 인

공인명 북 아 현 제 2 동 장

인 영			<p>규정에 의하여 본원의 운영과 내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적용범위)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또는 관제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3 조 (감독범위) 조례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장 (이하 "분원장"이라 한다) 에 대한 감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 급이상 분원공무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훈련 통계의 보고와 주요 학사에 관한 사항 <p>제 4 조 (관리담당) ①관리담당 및 관리제와 교학제를 둔다. ②관리담당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서, 관인관수, 관중단속,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나. 직강비리군 및 인방위정현에 관한 사항 다. 인사, 장비 및 차영규칙관리 라. 예산의 편성, 집행과 회계 및 물품관리
공인명	직 인	. 제 인	
연 회 제 2 동			
예 규			
◎서울특별시에규제 441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운영규정			
<p>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p>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 (이하 "분원"이라 한다) 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 10 조의</p>			

<p> 마. 급여, 연금, 국민저축 및 의료보험 바.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학급편성, 생활지도 및 근태평가 사. 교재 및 제지급품 수불 아. 피교육자 자치 생활지도 자. 피교육자 퇴교 및 사고처리 차. 강의실 및 의무실 운영 카. 제증명 발급 및 원외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분원내 다른담당 및 담당내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학제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강사초빙 및 강사료 지급 다. 교육시간표 작성 및 운영 라. 피교육자 수료증 및 상장교부 마. 교육용 기자재 운영관리 바. 부교재연구 편찬 및 발간 사. 교육안내 및 과정소개 아. 입교, 수료식 주관 제 5 조 (교육담당) ①교육담당 밑에 교육 1제와 교육 2 제를 둔다. ②교육담당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 1제 가. 교과외 편성 및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p>	<p> 나. 교관강사의 선정과 교육 다.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서작성 라.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교육담당내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육 2제 가. 교재원고관리 및 편찬 나.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다. 교재편찬위원회 운영 제 6 조 (전임교관) ①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담당밑에 자체 전임교관을 둘수 있다. ②제 1 항의 전임교관은 분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제 7 조 (회계처리의 특례) ①조례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원에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의 예산 및 회계처리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분원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운수사업 특별회계 규칙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운영사업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원무의 협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원장이 원장에게 사전 보고후에 분원의 원무를 수행한다. </p>
---	---

<p>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3년 7월 23일자 령제 286 호</p> <p>내 무 국 이 영 제 지 방 서 기 관</p> <p>1982.5.24 자 직위해제 처분을 사건 83도 959 호 1983.6.14 자 대법원 판결에 의거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 1983년 7월 26일자 령제 287 호</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 한 상 태 지 방 기 계 기 사</p> <p>산업경제국</p> <p>© 1983년 7월 27일자</p>		<p>보 건 위 생 과 라 경 태 지 방 수 의 사</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p> <p style="text-align: right;">령제 288 호</p> <p>노량진수원지사무소 최 의 제 지방전기장(기능직7등급)</p> <p>총 무 과</p> <p>© 1983년 8월 1일자 호 289 호</p> <p>경북김천지방사업소 방 재 호 지 방 항 경 주 사</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내무국 의전과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령제 290 호</p>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윤 승 원	건설관리국	지방지적기사	영등포구	지적기사
박 성 환	서대문구	"	도시계획국지적과	지방지적기사
박 정 오	영등포구	지적기사	주택기획과	"
김 연 재	강 남 구	지방지적기사	서대문구	"
김 경 태	도시계획국	지방지적기사보	은평구	지방지적기사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자	도시계획국 지방지적기원	용산구	지방지적기원
손병운	영등포구 "	지적과	"
이회숙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보	"	지방지적기원보
최영수	도시계획국 "	은평구	"
김목연	" "	강남구	"
노영빈	" "	강동구	"

◎ 1983년 7월 28일자 령제 291 호

세종문화회관 윤상호
지방별정직 7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합기술시험연구소 홍성철
지방별정직 8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83년 8월 1일자 령제 292 호

강서구세무 2과 안장섭
지방행정주사

시립근로자회관

근로자회관 이강수
지방행정주사

마포구

령제 294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호정	행정주사보에 임함.	도봉구세무 2과	지방행정주사보
안홍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은평구산업과	행정서기
김광휘	행정서기에 임함	"	지방행정서기
서규선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마포구기획감사과	행정주사보
민병설	행정서기에 임함	" 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이연복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 청소과	행정서기
이용보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 민방위과	행정주사보
최인엽	행정주사보에 임함	" "	지방행정주사보

<p>관악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p> <p>종로구보건소장</p> <p>종로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p> <p>도봉구보건소장</p>		<p>명제 295호</p> <p>신 기준</p> <p>정 병 상</p>	<p>명제 296호</p> <p>장 치 욱</p> <p>지방의무기정에 임함 15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장에 보함</p>
<p>명제 297호</p>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정 기 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기능 8등급)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철 도 원	철 도 원 (기능 8등급)
박 주 남	"	"	"
박 영 수	"	"	"
오 영 명	"	"	"
신 창 언	"	"	"
이 치 배	"	"	"
황 영 연	"	"	"
이 수 남	"	"	"
배 재 단	"	"	"
문 제 일	"	"	"
김 영 태	"	"	"
강 난 심	"	"	"
이 재 향	"	"	"
안 성 천	"	"	"
윤 봉 열	"	"	"
김 윤 기	"	"	"
백 실 영	"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병우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기능 8 등급)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철도청	철도원 (기능 8 등급)
한태환	"	"	"
한삼호	"	"	"
유옥환	"	"	"
배만섭	"	"	"
최종안	"	"	"
오영식	"	"	"
서갑배	"	"	"
김원근	"	"	"
서현태	"	"	"
전우성	"	"	"
이진영	"	"	"
이영현	"	"	"
허탑	"	"	"
강희상	"	"	"
김기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기능 9 등급)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	철도원 (기능 9 등급)
윤선진	"	"	"
고중환	"	"	"
이송성	"	"	"
이병국	"	"	"
이용만	"	"	"
호철부	"	"	"
정재환	"	"	"
이성기	"	"	"
김오균	"	"	"
황농락	"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용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기능 9등급)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철도청	철도원 (기능 9등급)
이재욱	"	"	"
김재명	"	"	"
한등기	"	"	"
최규은	"	"	"
<p>© 1983년 8월 2일자 령제 298호</p> <p>관 약 구 강 제 인 지 방 행 정 주 사</p> <p>관 약 구 박 제 관 지 방 행 정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 1983년 8월 5일자 령제 299호</p> <p>전 설 단 리 국 순 순 관 지 방 지 적 기 사</p> <p>주 택 기 획 과</p> <p>산 업 경 제 국 한 상 처 지 방 기 제 기 사</p> <p>연 료 과</p> <p>© 1983년 8월 5일자 령제 300호</p>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동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국	지방토목기사
김호섭	도시계획과	"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경 태	지 적 과	도시 계획국	지방지적기사보
김 영 자	"	"	지방지적기원
최 영 수	"	"	지방지적기원보
김 무 연	"	"	"
노 영 빈	"	"	"

서울 특별 시장